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6-143
------------	-------

제출연월일 : 2011. 11. .

제 출 자 : 동두천시장

□ 개정이유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 브랜드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시가 소요산에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의 최초 입점업체에 대하여 시설사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완화 하여 입점업체 유치와 타운을 활성화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브랜드육타운 시설사용료의 최소금액을 브랜드육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나. 브랜드육타운의 시설 사용에 따른 보증금은 층별로 따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다. 브랜드육타운 수허가자가 허가기간 종료 이전에 시설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180일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라. 브랜드육타운에 부속된 주차장의 사용료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 마. 브랜드육타운의 시설중 부속 주차장과 공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동두천시로 조정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 함(안 제12조)
- 바. 브랜드육타운 시설사용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 2012년 회계검사 결과를 반영 하여 이를 정산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사. 최초 수허가자에 대한 초기투자 비용의 지원을 위해 브랜드육타운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년도별 감액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3항)

☐ 개정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예산수반상황 : 비예산사업

☐ 입법예고결과 : 해당없음

☐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법」 3조”를 “「축산법」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연 1천분의 20이하”를 “연 1천분의 10이하”로, “연 1천분의 20”을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이상인 수허가자 : [(각 층별 업소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의 합계금액×12%)/2] /시설의 사용일수×365일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이하인 수허가자 : (시설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12%)/시설의 사용일수×365일
3. 연간사용료는 층별로 따로 산정하되 연간 사용료가 브랜드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허가자가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시장에게 반환한 날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차장 사용료) 브랜드육타운에 부속된 주차장의 사용료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브랜드육 타운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의 관리

제12조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물 청소인력의 배치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금에 대한 특례) 브랜드육 타운의 최초 수허가자의 사용료에 대한 보증금은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보증금은 제18조에 의한 2012년도 회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라 이를 정산한다.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이상인 수허가자 : 2억원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이하인 수허가자 : 7천만원

③(사용료에 대한 특례) 브랜드육 타운의 최초 수허가자의 사용료는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12년도 :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2. 2013년도 : 매출액에 100분의 11을 곱한 금액

소관실과		농업녹지과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성명	농업녹지과장 이 선 재
	담당·팀장 직위·성명	축정팀장 김 유 종
	담 당 자 성명·전화	축정팀장 김유종 860-232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 브랜드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동두천시가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하 “브랜드육타운”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①수허가자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결산하여 그 금액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브랜드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으로 한다. ②~③(생략) 제6조(보증금 등) ① (생략) ②제1항에서 정한 연간 사용료는 (시설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12%)/시설의 사용기간×365일로 한다.	제1조(목적) ----- 「축산법」 제3조 ----- ----- ----- ----- ----- -----. 제5조(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①----- ----- ----- ----- -----연 1 천분의 10이하----- -----연 1천분의 10으 -----. ②~③(현행과 같음) 제6조(보증금 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정한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 이상인 수허가자 : [(각 층별 업소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의 합계금액×12%)/2] / 시설의 사용일수×365일

현행	개정안
③ ~ ④(생략) 제8조(보증금의 반환) (생략) (신설) (신설)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 이하인 수허가자 : (시설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12%)/시설의 사용일수×365일 3. 연간사용료는 층별로 따로 산정하되 연간 사용료가 브랜드육타운 재산 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으로 한다. ③ ~ ④(현행과 같음) 제8조(보증금의 반환) (현행과 같음) ②수허가자가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설의 사용 또는 수 익의 허가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 설을 시장에게 반환한 날부터 180일에 해당하 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주차장 사용료) 브랜드육타운에 부 속된 주차장의 사용료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 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책임의 한계) (생략) 1.(생 략) 가.~다.(생 략) <u>라. 정원의 관리(전정과 자연 고사목의 교체에 한한다)</u> 마. (생 략) 2. (생 략) 가. ~ 다. (생 략) <u>라. 주차장 관리인력의 배치</u> <u>마. 건물 내·외부 청소인력의 배치</u> <u>바. ~ 사. (생 략)</u>	제12조(책임의 한계)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가.~다.(현행과 같음) <u>라. 브랜드육 타운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의 관리</u>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u>(삭 제)</u> <u>마. 건물 청소인력의 배치</u> <u>바. ~ 사. (현행과 같음)</u>